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-

# 제 안 설 명 서

2019. 7.



김정윤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김정윤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및 지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□ 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청정 지역을 추가하고,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□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2조제4호에는 청소년 클린판매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제3호에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장소로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하였습니다.

- 안 제5조에서는 종전 청소년 보호 조항을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조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9. 7. 1일부터 2019. 7. 11일까지 10 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 지역 내 과도한 음주로 초래 될 수 있는 피해와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, 청소년 음주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,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,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정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번호	0071995
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: 2019. 7. 1.

발의자: 김정윤, 박종길, 배지훈, 이성순, 김귀화  
안대국, 김태형, 김화덕, 윤권근

## 1. 개정이유

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청정 지역을 추가하고,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'청소년 클린판매점' 용어 정의 추가(안 제2조제4호)
- 나. 음주청정지역 지정 장소로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 추가(안 제4조제1항제2호~제3호)
- 다. 종전 청소년 보호 조항을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조항으로 변경(안 제5조)

## 3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- 가. 사유: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
- 나. 근거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

## 5. 관계법령: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도로교통법」 제21조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청소년 클린판매점”이란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.  
제4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
3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
제5조의 제목 “(청소년 보호)”를 “(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
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청소년 클린판매점”이란  <u>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.</u></p>
<p>제4조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조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 ①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</p>
<p>2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4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3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</p>

### 른 어린이 보호구역

② · ③ (생 략)

제5조(청소년 보호)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, 홍보,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)

①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【관 계 법령】

### 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

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(이하 "학교경계등"이라 한다)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1.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(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
  2.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- ② ~ ⑤ (생략)

### □ 도로교통법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  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  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  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- ② ~ ③ (생략)